

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1998. 10. 1. (규칙 제251호)

변경 2003. 10. 9. (규칙 제414호)

2005. 12. 5. (규칙 제469호)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학칙제71조에서 규정한 공개강좌중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(이하“본 과정”이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운영방침)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갖춘 자에게 경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법을 학습케 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.

제 2 조의2 삭제

제 2 조의3(최고경영자과정운영위원회) ①본 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

② 위원회는 사회체육대학원장, 대학원장, 교무과장, 사회체육대학원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체육대학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

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. 단, 보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
2. 세입·세출 예산 및 결산
3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4.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(등록금 감면 포함)
5.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사항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

제 3 조(모집정원) 본 과정의 모집정원은 100명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조(개강시기) 본 과정의 개강시기는 학기초로 한다.

제 5 조(지원자격) 본 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외 체육·스포츠분야의 경영관리자 및 지도자
2.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
제 6 조(전형) 본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.

제 7 조(모집방법) 본 과정의 모집방법은 총장이 정한다.

제 8 조(수강료) 본 과정에 등록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수업연한)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6개월(1학기)로 한다.

제10조(수료) ①본 과정에 개설된 강좌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한다.

②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“별지”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.

제11조 삭제

제12조(시설물의 이용) 본 과정 수강자는 수강기간중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3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부 칙 (1998. 10. 1. 제251호)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1999년 2월 1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수강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 (1999. 2. 26. 제262호)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10. 9. 제414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12. 5. 제46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000 호

수료증서

성명 0 0 0
1900년 00월 00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제00기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였기에
이를 증명함.

200 년 00월 00일

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장 000박사 0 0 0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 0 0 0